PARCREEKS
동탄 파크릭스

동탄 파크릭스 A51-2BL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및 견본주택 운영 안내
- 동탄 파크릭스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동탄파크릭스.com) 및 관람을 병행 운영합니다.
- 동탄 파크릭스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홈페이지(http://동탄파크릭스.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 입장 및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안내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자격 검증을 위한 당첨자 서류접수,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됩니다.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의심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다.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입장 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시 관람이 제한됩니다.)
  라. 견본주택 입장 전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전신소독기를 통한 전신소독, 방명록 작성 및 신분 확인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마.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바.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당첨자 사전 자격확인서류 접수 기간
- 2022년 11월 26일(토) ~ 2022년 12월 02일(금) 7일간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30분

▶ 특별공급 신청일
- 견본주택 특별공급 신청 일정 : 2022년 11월 14일(월) 10:00 ~ 14:00(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 접수 및 그 외 모두 불가함.)

■ 본 아파트는 안심 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관람 인원 제한 등으로 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031-378-4034)를 운영할 계획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으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031-378-4034)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청 주택과-25911(2022.11.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51-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9개동 총 414세대
[특별공급 193세대(일반[기관추천] 28세대, 다자녀가구 41세대, 신혼부부 56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생애최초 5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세대수	최하층우선배정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2022000763	01	074.7938	74	74.7938	21.4508	96.2446	42.1989	138.4435	72.5617	40	4	4	8	1	8	25	15	4
		02	084.9061A	84A	84.9061	23.8624	108.7685	47.9043	156.6728	82.3722	59	6	6	12	2	12	38	21	6
		03	084.9419B	84B	84.9419	23.8770	108.8189	47.9245	156.7434	82.4069	178	18	18	36	5	36	113	65	11
		04	097.9688A	97A	97.9688	27.0701	125.0389	55.2744	180.3133	95.0451	54	-	5	-	2	-	7	47	4
		05	097.8720B	97B	97.8720	28.3949	126.2669	55.2198	181.4867	94.9512	69	-	7	-	2	-	9	60	4
		06	110.7034A	110A	110.7034	29.9761	140.6795	62.4593	203.1388	107.3996	8	-	1	-	-	-	1	7	1
		07	110.6914B	110P1	110.6914	34.0604	144.7518	62.4526	207.2044	107.3880	4	-	-	-	-	-	-	4	-
		08	110.9467C	110P2	110.9467	31.6539	142.6006	62.5965	205.1971	107.6357	2	-	-	-	-	-	-	2	-
	합 계										414	28	41	56	12	56	193	221	3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74.7938	084.9061A	084.9419B	097.9688A	097.8720B	110.7034A	110.6914B	110.9467C
약식표기	74	84A	84B	97A	97B	110A	110P1	110P2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달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제곱미터(㎡)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기타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대지지분의 증감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계약면적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산하는 경우에도 정산금에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2.12.28.	‘23.03.20.	‘23.09.20.	‘24.03.20.	‘24.07.22.	‘24.11.20.	‘25.03.20.	
074.7938	74	40	1	4	169,954,297	258,845,703	-	428,800,000	10,000,000	32,880,000	42,880,000	42,880,000	42,880,000	42,880,000	42,880,000	42,880,000	128,640,000
			2	4	169,954,297	263,445,703	-	433,400,000	10,000,000	33,340,000	43,340,000	43,340,000	43,340,000	43,340,000	43,340,000	43,340,000	130,020,000
			3	4	169,954,297	267,945,703	-	437,900,000	10,000,000	33,790,000	43,790,000	43,790,000	43,790,000	43,790,000	43,790,000	43,790,000	131,370,000
			4	4	169,954,297	272,545,703	-	442,500,000	10,000,000	34,250,000	44,250,000	44,250,000	44,250,000	44,250,000	44,250,000	44,250,000	132,750,000
			5~9	20	169,954,297	286,245,703	-	456,200,000	10,000,000	3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136,860,000
			10	4	169,954,297	290,845,703	-	460,800,000	10,000,000	36,080,000	46,080,000	46,080,000	46,080,000	46,080,000	46,080,000	46,080,000	138,240,000
084.9061A	84A	59	1	3	192,932,490	299,967,510	-	492,900,000	10,000,000	39,290,000	49,290,000	49,290,000	49,290,000	49,290,000	49,290,000	49,290,000	147,870,000
			2	4	192,932,490	305,167,510	-	498,100,000	10,000,000	39,810,000	49,810,000	49,810,000	49,810,000	49,810,000	49,810,000	49,810,000	149,430,000
			3	6	192,932,490	310,367,510	-	503,300,000	10,000,000	40,330,000	50,330,000	50,330,000	50,330,000	50,330,000	50,330,000	50,330,000	150,990,000
			4	6	192,932,490	315,667,510	-	508,600,000	10,000,000	40,860,000	50,860,000	50,860,000	50,860,000	50,860,000	50,860,000	50,860,000	152,580,000
			5~9	30	192,932,490	331,367,510	-	524,300,000	10,000,000	42,430,000	52,430,000	52,430,000	52,430,000	52,430,000	52,430,000	52,430,000	157,290,000
			10~11	10	192,932,490	336,667,510	-	529,600,000	10,000,000	42,960,000	52,960,000	52,960,000	52,960,000	52,960,000	52,960,000	52,960,000	158,880,000
084.9419B	84B	178	1	11	193,013,765	291,886,235	-	484,900,000	10,000,000	38,490,000	48,490,000	48,490,000	48,490,000	48,490,000	48,490,000	48,490,000	145,470,000
			2	11	193,013,765	296,986,235	-	490,000,000	10,000,000	3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47,000,000
			3	11	193,013,765	302,186,235	-	495,200,000	10,000,000	39,520,000	49,520,000	49,520,000	49,520,000	49,520,000	49,520,000	49,520,000	148,560,000
			4	11	193,013,765	307,286,235	-	500,300,000	10,000,000	4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150,090,000
			5~9	54	193,013,765	322,786,235	-	515,800,000	10,000,000	4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154,740,000
			10~19	80	193,013,765	327,986,235	-	521,000,000	10,000,000	4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56,300,000
097.9688A	97A	54	1	3	222,615,007	334,986,357	33,498,636	591,100,000	10,000,000	49,110,000	59,110,000	59,110,000	59,110,000	59,110,000	59,110,000	59,110,000	177,330,000
			2	3	222,615,007	340,713,630	34,071,363	597,400,000	10,000,000	4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179,220,000
			3	4	222,615,007	346,440,902	34,644,091	603,700,000	10,000,000	50,370,000	60,370,000	60,370,000	60,370,000	60,370,000	60,370,000	60,370,000	181,110,000
			4	4	222,615,007	352,168,175	35,216,818	610,000,000	10,000,000	5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5~9	20	222,615,007	369,349,993	36,935,000	628,900,000	10,000,000	52,890,000	62,890,000	62,890,000	62,890,000	62,890,000	62,890,000	62,890,000	188,670,000
			10~14	20	222,615,007	375,077,266	37,507,727	635,200,000	10,000,000	53,520,000	63,520,000	63,520,000	63,520,000	63,520,000	63,520,000	63,520,000	190,560,000
097.8720B	97B	69	2	3	222,395,074	335,731,750	33,573,176	591,700,000	10,000,000	49,170,000	59,170,000	59,170,000	59,170,000	59,170,000	59,170,000	59,170,000	177,510,000
			3	4	222,395,074	341,368,114	34,136,812	597,900,000	10,000,000	49,790,000	59,790,000	59,790,000	59,790,000	59,790,000	59,790,000	59,790,000	179,370,000
			4	4	222,395,074	347,095,387	34,709,539	604,200,000	10,000,000	50,420,000	60,420,000	60,420,000	60,420,000	60,420,000	60,420,000	60,420,000	181,260,000
			5~9	20	222,395,074	364,095,387	36,409,539	622,900,000	10,000,000	52,290,000	62,290,000	62,290,000	62,290,000	62,290,000	62,290,000	62,290,000	186,870,000
			10~19	38	222,395,074	369,731,750	36,973,176	629,100,000	10,000,000	52,910,000	62,910,000	62,910,000	62,910,000	62,910,000	62,910,000	62,910,000	188,730,000
110.7034A	110A	8	1	1	251,551,765	391,407,486	39,140,749	682,100,000	10,000,000	58,210,000	68,210,000	68,210,000	68,210,000	68,210,000	68,210,000	68,210,000	204,630,000
			2	1	251,551,765	398,043,850	39,804,385	689,400,000	10,000,000	58,940,000	68,940,000	68,940,000	68,940,000	68,940,000	68,940,000	68,940,000	206,820,000
			3	1	251,551,765	404,589,304	40,458,931	696,600,000	10,000,000	5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208,980,000
			4	1	251,551,765	411,225,668	41,122,567	703,900,000	10,000,000	60,390,000	70,390,000	70,390,000	70,390,000	70,390,000	70,390,000	70,390,000	211,170,000
			5~8	4	251,551,765	430,952,940	43,095,295	725,600,000	10,000,000	62,560,000	72,560,000	72,560,000	72,560,000	72,560,000	72,560,000	72,560,000	217,680,000
110.6914B	110P1	4	12	4	251,524,595	523,068,550	52,306,855	826,900,000	10,000,000	72,690,000	82,690,000	82,690,000	82,690,000	82,690,000	82,690,000	82,690,000	248,070,000
110.9467C	110P2	2	11	2	252,104,760	534,541,127	53,454,113	840,100,000	10,000,000	74,010,000	84,010,000	84,010,000	84,010,000	84,010,000	84,010,000	84,010,000	252,03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분양 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지정된 계약금 계좌 외에 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음.

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11.1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535-1)
일반공급	1순위	2022.11.15(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2.11.16(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 · 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2.11.24.(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2.12.08.(목)~2022.12.12.(월) (09:30~16:3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535-1 동탄 파크릭스 모델하우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 · 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지정된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SH수협은행	4910-1392-772904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중도금 /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 분양대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SH수협은행, 1010-2230-9286,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로 관리합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예시 – 0101동 411호 홍길동(계약자) → '01010411홍길동' / 0101동 2717호 홍길동(계약자) → '01012717홍길동')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한 매월 이자 납입일에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 홍보관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해밀씨엠	㈜천도엔지니어링	㈜한백에프엔씨	㈜한백에프엔씨
감리금액	₩1,277,127,940	₩382,250,500	₩66,000,000	₩132,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명				시공사
상호	현대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동부건설(주)	대보건설(주)	현대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탄방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375번길 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007909	160111-0003121	110111-0005002	164511-0002874	110111-0007909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22-101-0006700 호	일천오백팔십구억일천칠백일십오만원정 (₩ 158,917,15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홍보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535-1 동탄 파크릭스 모델하우스

■ 분양문의 : 031-378-4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동탄파크릭스.com**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031.378.4034

4개 블록(A51-1 / A51-2 / A52 / A55) **총 2,063세대_74㎡~110㎡**

현대건설 계룡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